■ 감사원사무처 직제 [별표 2] 국·단별 사무분장표(제9조제2항 관련) <개정 2026. 5. 4.>

| 국·단 | 사 무 분 장 |
|---|---|
| 재정·경제 감사국 | 1. 재정경제부, 기획예산처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공정거래위원회, 우주항공청, 조달청, 국가데이터처, 관세청,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<br>2. 국가기관·기금의 예산에 대한 분석 및 점검 총괄<br>3.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(연구관리전문기관 포함)<br>4.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|
| 산업·금융 감사국 | 1. 산업통상부, 농림축산식품부, 금융위원회, 중소벤처기업부, 지식재산처, 농촌진흥청,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<br>2.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, 한국투자공사, 예금보험공사, 한국자산관리공사, 한국무역보험공사, 한국주택금융공사, 한국예탁결제원과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<br>3. 국민연금공단, 공무원연금공단,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, 군인연금 업무에 관한 사항<br>4. 과학기술인공제회, 한국교직원공제회, 대한소방공제회, 행정공제회, 한국지방재정공제회, 경찰공제회, 군인공제회,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관한 감사사항<br>5.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사업에 관한 사항<br>6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|
| 국토·환경 감사국 | 1. 국토교통부, 기후에너지환경부, 해양수산부, 해양경찰청, 기상청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, 새만금개발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<br>2. 공공부문(지방자치단체, 지방교육행정기관, 지방공기업 소관 제외)에서 발주한 건설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|

| | |
|---|---|
| | 3. 공공부문(지방자치단체, 지방교육행정기관, 지방공기업 소관 제외)의 시설물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감사사항<br>4.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|
| 공공기관 감사국 | 1. 한국전력공사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가스공사, 한국석유공사, 한국지역난방공사, 대한석탄공사, 전력거래소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주택도시보증공사, 한국부동산원,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, 한국철도공사, 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, 부산항만공사, 인천항만공사, 울산항만공사, 여수광양항만공사, 한국농어촌공사, 해양환경관리공단, 한국관광공사, 한국마사회, 강원랜드, 한국조폐공사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<br>2. 공공기관의 예산분석 및 모니터링 총괄<br>3.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|
| 공공재정 회계 감사국 | 1. 공공재정 부정지출 분석 및 점검 총괄<br>2. 공공재정 부정지출에 관한 감사사항<br>3. 국가·공공기관의 결산검사 총괄<br>4. 회계관계 법령의 해석·답변 및 회계집행 의문사항 문의에 대한 자문 |
| 사회·복지 감사국 | 1.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성평등가족부, 교육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질병관리청, 국가교육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<br>2. 국립병원·특수법인병원·시도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관한 감사사항<br>3.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|
| 행정·안전 감사국 | 1. 대통령비서실, 대통령경호처, 국가안보실, 국회, 대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국무조정실, 국무총리비서실, 행정안전부, |

| | |
|---|---|
| | 법무부, 문화체육관광부, 소방청, 인사혁신처, 법제처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국민권익위원회, 국가인권위원회, 원자력안전위원회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, 검찰청, 경찰청,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<br>2. 한국방송공사와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<br>3.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(조세심판원 제외)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|
| 외교·국방 감사국 | 1. 외교부, 통일부, 국가정보원, 국방부, 국가보훈부, 방위사업청, 병무청, 재외동포청,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, 국가안전보장회의, 5.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<br>2. 방위력 개선사업에 관한 감사사항<br>3. 국제기구에 대한 감사사항<br>4.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|
| 미래전략 감사국 | 1. 미래 위험요인에 대비한 감사사항<br>2.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|
| 반부패 조사국 | 1. 공직기강 점검 총괄<br>2. 부정·비리 및 불법·부패행위 등 조사·처리<br>3.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총괄<br>4. 청탁금지법, 이해충돌법, 부패방지권익위법 관련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<br>5. 공직감찰 정보수집 및 자료관리 |
| 지방행정 감사1국 | 1. 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광역시,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하급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<br>2. 제1호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|

| | |
|---|---|
| 지방행정<br>감사2국 | 1.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하급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<br>2. 지방자치단체(지방교육행정기관 포함) 및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건설사업에 관한 감사사항<br>3. 지방자치단체(지방교육행정기관 포함) 및 지방공기업의 시설물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감사사항<br>4. 제1호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|
| 디지털<br>감사국 | 1.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감사사항<br>2. 국가기관 등의 IT기술 진흥 및 정보화사업에 관한 감사사항<br>3. 정보 공유 및 보호, 사이버 안전관리 등에 관한 감사사항<br>4. 제1호의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<br>5. 감사정보 수집·분석·관리업무 총괄<br>6. IT기반 감사기법 개발 및 활용 지원, 전산감사 지원 |
| 국민제안<br>감사1국 | 1. 감사청구(국민·공익) 관련 사무 총괄<br>2. 감사청구(국민·공익·국회)사항의 조사 및 처리 |
| 국민제안<br>감사2국 | 1. 감사제보 관련 사무 총괄<br>2. 감사제보사항의 조사 및 처리<br>3. 기업 불편·부담 사항의 발굴 및 조사·처리<br>4. 타 법령(부정청탁, 부패행위, 이해충돌, 청원 등)에 따른 외부 신고사항의 접수, 검토 및 후속조치 등 관리 총괄 |
| 심의실 | 1. 법령 및 규정 등의 제정·개폐 및 조정<br>2. 회계 및 감사 관계법령 등에 제정·개폐에 대한 의견표시 |

| | |
|---|---|
| | 3. 감사원 소관 법령(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외)의 해석·답변<br>4. 행정·국가소송의 수행 및 관리<br>5. 행정심판위원회 운영<br>6. 감사위원회의 의사<br>7.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<br>8.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<br>9. 감사위원회의의 심의·검토 보좌<br>10.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<br>11. 재심의 관련 사무 총괄 |
| 적극행정<br>공공감사<br>지원관 | 1. 적극행정 및 자체감사활동 지원 제도 총괄<br>2.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<br>3. 모범사례 발굴·전파 총괄<br>4.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총괄<br>5.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운영 총괄<br>6. 자체감사 개선·지원 총괄<br>7. 감사활동조정협의회 운영 총괄<br>8. 공공감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총괄<br>9.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점검·심사 총괄<br>10. 감사결과 사후관리 및 이행확인 감사 총괄 |
| 심사관리관 | 1. 심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 |